어선법





해양수산부(어선안전정책과) 044-200-5551, 5553

제1장 총칙 <개정 2008. 3. 28.>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어선의 건조・등록・설비・검사・거래 및 조사・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 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,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6. 12. 27.> 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 10. 31., 2019. 8. 27.>

- 1. "어선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
 - 가. 어업(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다. 이하 같다), 어획물유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(이하 "수산업"이라 한다)에 종사하는 선박
 - 나. 수산업에 관한 시험·조사·지도·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
 - 다.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
 - 라.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
- 2. "개조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(이하 "주요치수"라 한다)를 변경하는 것
 - 나.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
 - 다.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
- 3. "만재흘수선(滿載吃水線)"이란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.
- 4. "복원성"이란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3조(어선의 설비)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1. 선체
- 2. 기관
- 3. 배수설비
- 4. 돛대
- 5. 조타 · 계선 · 양묘설비
- 6. 전기설비
- 7. 어로 · 하역설비
- 8. 구명·소방설비
- 9. 거주 위생설비
- 10.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
- 11. 항해설비
- 12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

[본조신설 2009. 5. 27.]

- 제3조의2(복원성 승인 및 유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 야 한다.
 - 1.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
 - 2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원성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

지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7. 10. 31.]

- 제4조(만재홀수선의 표시 등)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홀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17. 10. 31 >
 -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,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7. 10. 31., 2020. 2. 18.>

[본조신설 2009. 5. 27.] [제목개정 2017. 10. 31.]

- 제5조(무선설비)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「전파법」에 따른 무선설 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 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「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세계해상조 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무선설비는 「전파법」에 따른 성능과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>
 -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0. 31.>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31.>

[본조신설 2009, 5, 27.]

- **제5조의2(어선위치발신장치)**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 (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)의 소유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(이하 "어선위치발신장치"라 한다)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8. 12. 31.>
 -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 으로 본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 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7. 10. 31., 2020. 2. 18.>
 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1. 7. 14.]

제6조(국제협약 규정의 적용)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 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.

[본조신설 2009. 5. 27.]

제2장 어선의 건조 <개정 2008. 3. 28.>

제7조 삭제 <1999. 2. 8.>

- 제8조(건조・개조의 허가 등)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・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라 한다)의 허가(이하 "건조・개조허가"라 한 다)를 받아야 한다(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.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3. 3. 23., 2013. 4. 5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

법제처

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4. 5., 2019. 8. 27.>

- 1.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「수산업법」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·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신청인이 「수산업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원양산업발전법」 및 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면허어업·허 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신청인이 이 법, 「수산업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원양산업발전법」 및 「내수면어업법」을 위반하여 행 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・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・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 정 2008. 3. 28., 2013. 3. 23.>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조·개조허가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 건을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3. 3. 23.>
- ⑤ 삭제 <2013. 4. 5.>

[제목개정 2008, 3, 28,]

- 제9조(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 등)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(이하 "어선건조·개조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(이하 "어선건조·개조업자"라 한다)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4, 12, 20.]
- 제9조의2(어선건조・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・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
 - 2.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- 3.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 · 개조업을 한 경우
 - 4.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·기관·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
 - 5.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어선건조·개조업의 등 록을 할 수 없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, 12, 20,]

- 제9조의3(어선건조·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·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,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ㆍ 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2. 20.]

- 제10조(허가의 취소 등)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건조・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・개 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・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 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24. 12. 20.>
 - 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- 2.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·개조의 중지, 어선 또는 어선

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20.>

- 1. 건조・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・개조업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
- 2. 어선건조 · 개조업자가 건조 · 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11조 삭제 <1999. 2. 8.>

제12조 삭제 <1999. 2. 8.>

제3장 어선의 등록 <개정 2008. 3. 28.>

- 제13조(어선의 등기와 등록)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・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(이하 "선적항"이라 한다)를 관합하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선박등기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어 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.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 여야 한다.
 - 1.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: 선박국적증서
 - 2.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(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): 선적증서
 - 3.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: 등록필증
 -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13조의2(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)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 야 그 효력이 생긴다.

[본조신설 2008. 3. 28.]

제13조의3(압류등록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「국 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 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31., 2016, 12. 27.>

[본조신설 2008, 3, 28,]

- **제14조(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)**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재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2. 18.>
 -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 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재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18.>

[전문개정 2008, 3, 28.]

제15조(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)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,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(이하 "선박국적증서등"이라 한다)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 다만, 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, 제9조, 제11조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6호,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3. 3. 23., 2019. 8. 27.>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- **제16조(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)**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, 선적항, 총톤수 및 흘수(吃水)의 치수 등(이하 "명칭등"이라 한다)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 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17조(등록사항의 변경)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.> [전문개정 2008, 3, 28,]

제18조(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)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08. 3. 28.]

- 제19조(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)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 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1.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
 - 2.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
 - 3. 멸실·침몰·해체 또는 노후·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 - 4.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0. 31.>
 - 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 - 2.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·신고·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. 다만,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・제2호 및 제4호(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 한다)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
 -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 할하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20조 삭제 <1999. 2. 8.>

제4장 어선의 검사 등 <개정 2009. 5. 27., 2017. 10. 31.>

- 제21조(어선의 검사)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,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 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 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17. 10. 31.>
 - 1. 정기검사

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

2. 중간검사

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

- 3. 특별검사
 -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
- 4. 임시검사

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

- 5. 임시항행검사
 -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
-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「전파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 10. 31.>

[본조신설 2009. 5. 27.]

- 제22조(건조검사 등)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・제2호・제3호・제5호・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흨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3. 23... 2013. 4. 5., 2020. 2. 18.>
 -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(이하 "어선용품"이라 한다)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 을 제조・개조・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(이하 "예비검사"라 한다)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「선박안전법」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 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 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 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(이하 "별도건조검사"라 한다)를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 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[본조신설 2009, 5, 27.]
- 제23조(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)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(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)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·기관·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 여서는 아니 되며, 선체·기관·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·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2. 20.>
 - ② 어선건조·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·기관·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4. 12. 20.>

[본조신설 2017. 10. 31.]

- 제24조(형식승인 및 검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 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(이하 "형식승인시험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. <신설 2017. 10. 31.>
 - 1.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· 고시한 시험기관
 - 2. 「선박안전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지정시험기관
 -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·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「선박안전법」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 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31.>
 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,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31.>

[본조신설 2009. 5. 27.]

- 제24조의2(형식승인의 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
 - 2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
 - 3.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

-6/16-

- 5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선박안전법」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10. 31.]

- 제24조의3(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 · 고시할 수 있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3.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- 4.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・실수・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5.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
 - 6.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
 -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·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 다.

[본조신설 2017. 10. 31.]

- 제25조(지정사업장의 지정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 (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,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(이하 "지정사 업장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31.>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,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 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31.>
 - ③ 어선,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·지정제조사업장에서 건조·제조되고 제2 항에 따른 건조・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・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 우에는 그 어선,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31.>
 - ④ 어선,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,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17. 10. 31.>
 -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31.>

[본조신설 2009, 5, 27.]

[제목개정 2017. 10. 31.]

- 제26조(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18.>
 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건조・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,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
 - 3.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- 4.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
 - 5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,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・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
 - 6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
 - 7.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선박안전법」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

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7. 10. 31.]
- 제26조의2(하역설비의 확인 등)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・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(이하 "제한하중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2. 18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,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

[본조신설 2017. 10. 31.]

- 제27조(검사증서의 발급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, 10, 31.>
 - 1.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(어선의 종류・명칭・최대승선인원 및 만 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)
 - 1의2.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 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
 - 2.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
 - 3.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
 - 4.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
 - 5.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
 - 5의2.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
 - 6.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
 - 7.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・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
 - 8.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, 제5호, 제5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 서, 건조・제조・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 는 증인(證印)을 붙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10. 31.>

[본조신설 2009. 5. 27.]

- 제28조(검사증서의 유효기간)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 에서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- 1.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
 - 2.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
 - 3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 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.

[본조신설 2009. 5. 27.]

제29조(검사증서 등의 비치)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 • 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, 제9조, 제11조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6호,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 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19. 8. 27.>

[본조신설 2009. 5. 27.]

제30조(재검사의 신청) ① 제14조·제21조·제22조·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·재측정, 검사·검정 및 확인(이하 이 조에서 "검사등"이라 한다)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2. 18.>

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.>

[본조신설 2009. 5, 27.]

제5장 어선 등의 거래 <신설 2016. 12. 27.>

- 제31조(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・운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(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. 이하 "어선설비등"이라 한다)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,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 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 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(이하 "어선거래시스템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 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선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, 제공하는 정 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 ·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. 11.>
 - 1.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,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 보
 - 2.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
 - 3. 「수산업법」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,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,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
 - 4. 그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·우영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 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어선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 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・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12. 27.]

- 제31조의2(어선중개업의 등록 등)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(이하 "어선중개 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 - 1.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
 - 2.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.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 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 - 3. 그 밖에 어선중개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
[본조신설 2016. 12. 27.]

- 제31조의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18. 12. 31.>
 - 1. 미성년자
 -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6.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(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

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7.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

[본조신설 2016. 12. 27.]

- 제31조의4(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어선중개업자"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어선중개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
 - 2.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
 - 3.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법인의 대표자가 제31조의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
 - 4.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 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
 - 5.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.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 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 - 6.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・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
 - 7.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2. 27.]

- 제31조의5(휴업・폐업 등의 신고)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
 - 2.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
 - 3.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
 - 4.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

[본조신설 2016. 12. 27.]

- 제31조의6(과징금 처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 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2. 27.]

제31조의7(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) 어선중개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 하는 사람을 말한다)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

[본조신설 2016. 12. 27.]

- 제31조의8(거래계약서의 작성 등)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, 12, 27.]

- 제31조의9(보증보험 가입 등)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.
 - ②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,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대한

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1. 보장금액
- 2. 보장기간
- 3. 보증보험회사 및 그 소재지
- ③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금액, 가입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, 12, 27.]

제6장 어선의 연구·개발 <개정 2008. 3. 28.>

제32조(어선의 조사·연구)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, 3, 28.]

제33조(표준어선형의 개발)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 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7장 삭제 <1999. 2. 8.>

제34조 삭제 <1999. 2. 8.>

제35조 삭제 <1999. 2. 8.>

제36조 삭제 <1999. 2. 8.>

제8장 보칙 <개정 2008. 3. 28.>

- 제37조(다른 법령의 준용)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「선박법」 제2조, 제5조, 제9조제2항·제3항(대한민 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제10조(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, 제11조(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 한다), 제13조, 제26조(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),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대한민국선 박"은 "대한민국어선"으로, "한국선박"은 "한국어선"으로, "선박"은 "어선"으로, "선박취득지"는 "어선취득지"로, "선박관리인"은 "어선관리인"으로, "선박소유자"는 "어선소유자"로 본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4. 3. 24.>
 -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선박안전법」 제 6조,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7조, 제41조, 제44조, 제66조,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. 이 경우 "선박"은 "어선"으로 본다. <신설 2009. 5. 27., 2013. 3. 23., 2017. 10. 31.>
 -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「선박법」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 다. 이 경우 "한국선박"은 "한국어선"으로 본다. <개정 2008. 3. 28.>

[제목개정 2008. 3. 28.]

- 제37조의2(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・단속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・개조・등록・설비・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・단속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「수산업법」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・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. 11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12. 27.]

- 제38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16. 12. 27., 2017. 10. 31., 2024. 12. 20.>
 - 1.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
 - 1의2. 제10조에 따른 건조・개조허가의 취소, 어선의 건조・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 령
 - 2.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
 - 2의2.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
 - 2의3.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

- 2의4.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
- 3.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
- 4.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- 제39조(수수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 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대행기관"이라 한다)이 충톤수의 측정·재측정 및 검사 업무 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. <개정 2013. 4. 5., 2016. 12. 27., 2017. 10. 31., 2020. 2. 18.>
 - 1.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
 - 1의2.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
 - 2.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
 - 3.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신청하는 자
 - 4.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
 - 5.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
 - 6.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
 - 7.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
 - 8.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
 - 9.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
 - 10.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
 - 11.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
 - 11의2.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,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
 - 11의3.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
 - 12.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
 - 13.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
 - 13의2.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
 - 13의3.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
 - 14.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「선박안전법」 제12조제1항・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・도면승인을 신청한 자
 - 15.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・검정증서・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
 - 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, 3, 23., 2016, 12, 27.>
 - 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4. 5., 2016. 12. 27.>
 -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 의 수입으로 한다. <개정 2013. 4. 5., 2016. 12. 27.>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- 제40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・군수・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 -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, 12, 31.> [전문개정 2016. 12. 27.]
- 제41조(검사업무 등의 대행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「선박안전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(이하 "선급법인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3. 3. 23., 2013. 4. 5., 2016. 12. 27., 2017. 10. 31., 2020. 2. 18.>
 - 1.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
 - 1의2.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
 - 2.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
 - 3.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,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
 - 4.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

- 5.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
- 5의2.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,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
- 5의3.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
- 6.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
- 7.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
 - 가. 「선박안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
 - 나. 「선박안전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
 - 다. 「선박안전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・운송・저장 등에 관한 검사・승인
- ② 삭제 <1999. 2. 8.>
-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·검정증서·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(국제톤수증서,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 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28., 2009. 5. 27., 2013. 3. 23.>
-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, 3, 28, 2013, 3, 23.>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3. 3. 23.>
-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5. 27., 2013. 3. 23.>
-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을 검사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5. 27., 2013. 3. 23.>
-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31.> [제목개정 2008. 3. 28., 2009. 5. 27.]
- 제41조의2(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)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· 보급,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12. 27.>

[본조신설 2009, 5, 27.]

- **제42조(법정대리인의 의무)** 제14조,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영업에 대하여 성 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, 3, 18., 2020, 2, 18.>
 - 1. 어선의 총톤수 측정 · 재측정의 신청
 - 2.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
 - 3.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
 - 4.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
 - 5.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9장 벌칙 <개정 2008. 3. 28.>

- 제4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 정 2024. 12. 20.>
 - 1.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・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・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・개조를 발 주하 자
 - 1의2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・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・개조업을 한 자
 - 2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
- 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[전문개정 2017. 10. 31.]
- 제4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6. 12. 27., 2017. 10. 31., 2024. 12. 20.>
 - 1.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

- 13 / 16 -

항행에 사용한 자

1의2.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
- 2.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
- 2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자
- 3.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•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
- 4.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
- 4의2.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(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하 다)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·기관·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
-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,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
- 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
- 7.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
- 7의2.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
- 8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·건조검사증서·예비검사증서·별도건조검사증서·건조확인증·제조확인증·정비확인증 또는 제한하중등 확 인증을 발급받은 자
- 9.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
- 10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
-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(科) 하다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45조 삭제 <1997. 12. 17.>

제4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2.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

[전문개정 2009. 5, 27.]

제47조(벌칙)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28.]

- 제48조(양벌규정) ① 법인의 대표자,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, 제44조,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. 다만,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, 제44조, 제46조 및 제47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49조(벌칙의 준용) 어선에 대하여 「선박법」 제32조, 제33조제1항(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), 제34조, 제35조제1항 및 제 35조제2항제3호・제4호와 「선박안전법」 제83조제2호(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)・제14호, 제84조 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,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한국선박"은 "한국어선"으로, "선박"은 "어선"으로, "선박원부"는 "어선원부"로, "선박소유자"는 "어선소유자"로, "선박관리인"은 "어선관리인"으로 본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7. 10. 31.>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50조(벌칙의 적용) 이 법(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선박법」 및 「선박안전법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 51조에서 같다)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(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선박 법」 및 「선박안전법」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09. 5. 27.>

- 1.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
- 2.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
- 3.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51조(벌칙 적용의 예외)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,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 또는 시・군・자 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 4. 5.>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52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 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7. 10. 31., 2020. 2. 18., 2024. 12. 20.>

- 1.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,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한 자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-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·개조업을 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09. 5. 27., 2011. 7. 14., 2016. 12. 27., 2017. 10. 31.>
- 1.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 하지 아니한 자
- 2.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
- 3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
- 4.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
- 5.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
- 6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 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
- 7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
- 7의2.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
- 7의3.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
- 8.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
- 9.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・폐업・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10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- 11.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 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 • 제공하지 아니한 자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1. 7. 14., 2014. 11. 19., 2016. 12. 27., 2017. 7. 26., 2017. 10. 31.>
- 1.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경우: 시장ㆍ군수ㆍ구청장
- 2. 제1항제3호 · 제4호의 경우: 해양경찰청장
- ④ 삭제 <2009. 5. 27.>
- ⑤ 삭제 <2009. 5. 27.>
- [전문개정 2008. 3. 28.]

부칙 <제20601호, 2024. 12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어선건조・개조업의 등록 및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어선건조・개조업을 하고 있 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 · 개조업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등록 전에도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선건조ㆍ개조업자로 본다.